남해군의회 공고 제2021 - 1호

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 종 숙 의원 대표발의)

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해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남 해 군 의 회 의 장

1. 개정이유

가. 「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 개정으로 청사신축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행정조직에 맞게 반영함**(안제3조제2항제2호)**

조항	상임위원회	변경 전	변경 후
제2호	기획·행정 위원회	기획예산담당관, 행정복지국(행정과, 민원봉사과, 주민복지과, 청년혁신과, 재무과), 관광경제국(문화관광과, 지역활성과, 해양수산과, 체육진흥과)	기획예산담당관, **청사신축추진단**, 행정복지국(행정과, 민원봉사과, 주민복지과, 청년혁신과, 재무과), 관광경제국(문화관광과, 지역활성과, 해양수산과, 체육진흥과)

3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월 15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

- 보내는 곳 :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(우52425)

남해군의회(의사팀)

- 전화 : 055)860-3395 / 팩스 : 055)860-3738

다. 기재내용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, 대안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